



제 429국회 (정기회)
제 10차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에 렌탈사업자 추가〉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83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종오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7. 9.
3. 회 부 일 : 2025. 7.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렌탈 시장은 정수기, 가전기기, IT기기 등 다수의 서민층이 초기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 국내 렌탈 시장 규모는 2020년 40조 원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채무조정의 대상을 금융채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렌탈약정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송이나 추심업체를 통한 강제 추심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렌탈약정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추심업체가 지급명령 또는 불법적 수단을 통해 이를 강제 추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렌탈약정채권 추심과 관련된 문제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어 렌탈약정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채무조정 제도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정수기나 가전기기 등의 렌탈회사도 전기판매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와 같이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체결 대상으로 하여 채무자를 신속하게 지원·구제함과 동시에 불법추심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5조 제2항제3호의6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동산의 임대차를 영업으로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렌탈 제품의 이용자가 렌탈료를 연체하여 발생하는 렌탈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2항제3호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생략)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 -----.
1. ~ 3의5. (생략)	1. ~ 3의5. (현행과 같음)
<u><신설></u>	<u>3의6. 「상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동산의 임대차를 영업으로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¹⁾ 사이의 채무조정 지원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²⁾

○ 위원회 채무조정이란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를 거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³⁾하는 사적 채무구제제도임.⁴⁾

- 현재 채무조정의 종류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며, 종류별 개요는 아래와 같음.

1) 「서민금융법」 개정(법률 제20823호, 2025. 3. 18.)에 따라 금융회사 외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등 일부 비금융회사의 채권 역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협약체결주체가 기존 ‘채권금융회사’에서 ‘채권금융회사등’으로 변경됨.

2)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업무계획의 수립·시행

2.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2의2. 위원회 예산의 편성·변경 및 결산

3.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4.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5.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

6. 개인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4) 공적 채무구제제도로는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있음.

[표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구분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개요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	일시적인 상환불능에 처한 개인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략 방지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 회복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시행시기	2002년 10월	2009년 4월	2019년 9월	
대상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등에 부담한 채무			
대상채무자	3개월 이상 연체등록자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자	연체위기 또는 연체 30일 이하인 채무자	
채무금액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채무조정 수준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70% 감면 * 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최종 3.25%~8%) * 취약계층 원금 최대 30% 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최종 3.25%~15%/카드+채권상환10%) * 취약계층 원금 최대 15% 감면	
변제기간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 담보채무 최장 35년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 담보채무 조정불가	
채무조정 정보 공유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1년간	· 미등록		
비용	신청비용 5만원 (기초수급자 등은 면제)			
보증인 독촉 여부	·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불가			
실적	2020	8.7만명	2.2만명	0.6만명
	2021	8.6만명	1.7만명	1.1만명
	2022	8.1만명	2.3만명	1.7만명
	2023	8.7만명	3.8만명	4.3만명
	2024	9.3만명	3.5만명	4.7만명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등과 채무조정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등과 개인채무자 사이의 채무조정을 지

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현행법 제75조제2항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① 서민금융진흥원 ②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등 비금융채권을 보유한 자 ④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체결대상으로 나뉨.⁵⁾

- 신용회복위원회가 체결대상에게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체결대상은 ①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②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⁶⁾

5) ①②③④의 차이는, ②③에 해당하는 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을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법 제75조제3항), ①④에 해당하는 자는 협약 체결 의무가 없다는 점임.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⑤ 법 제75조제3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담보채권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협약 체결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8조(협약 체결대상 등) ② 영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현재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7,109개임
(2025년 7월 기준).

[표 2]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기관 현황

구분	업권/기관명	체결기관
법률에 의한 체결대상 (법§75)	은행	21
	생명보험사	19
	손해보험사	12
	지역농협	1,120
	지역수협	91
	저축은행	79
	새마을금고	1,456
	신협	898
	여신전문금융업	70
	산림조합	141
	진흥원	1
	한국장학재단	1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	1
	통신업권	29
시행령에 의한 체결대상 (시행령§55)	한국자산관리공사	1
	신용보증기관	8
	신용보증재단	18
	유동화전문회사	245
	대부업	878
	파산재단	38
	자산관리회사	219
	케이알앤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농협자산관리회사·중소기업중앙회	4
고시7)에 의한 체결대상(규정§8)	사업수행기관	52
	농림수산정책대손보전기금	1
소 계		5,403
위원회 자체 판단	기 타	19
	공공기관	2
	증권/투신	5
	대부업(지자체 등록)	1,680
총 계		7,109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에 해당하는 경우
- 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 채무조정 절차는 ① 개인채무자가 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 후 ② 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등로부터 신고받은 채무내역과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③ 채무조정안에 대해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하는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면 조정이 확정되며, 이를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됨.⁸⁾

□ 개정안은 「서민금융법」상 위원회의 의무적 협약체결 대상에 “동산의 임대차를 영업으로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소위 ‘렌탈 사업자⁹⁾’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개인채무자가 금융채권이

-
- 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등은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등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② 채권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 9) 렌탈(Rental) 산업은 「상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동산의 임대차를 영업으로 하며 운영되는 상행위 시장을 의미함.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아니라 상거래채권인 렌탈 채권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 현행 「서민금융법」은 채무조정의 대상을 금융채권 및 일부 비금융채권¹⁰⁾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최근 정수기, 가전기기, IT기기 등 정기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렌탈 시장이 확대¹¹⁾됨에 따라 이러한 렌탈약정 채무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¹²⁾이 제기되고 있음.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함)」은 개인‘금융’채권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렌탈 채권에 대하여는 추심 제한 및 채무조정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함)」은 연체된 채권을 전문 추심업체 등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므로¹³⁾ 렌탈

10) 학자금 대출 채무, 통신요금 채무, 전기요금 채무

11) 통계청 기준 2023년 렌탈 시장 매출액은 22.8조원으로, 2016년 13.5조원 대비 69% 증가(연평균 약 8% 증가)

12) KBS뉴스, “연체 금리 24% 물려도…렌탈 불법추심 무방비”, 2025. 10. 2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87271>)

1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회사 등 최초의 채권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현행 「서민금융법」은 개인채무자의 금융채권, 그리고 비금융채권 중 취약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서비스 일부에 대한 채권을 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협약대상을 확대할 경우 취약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유형의 상거래채권까지도 채무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법상 학자금 대출 채무, 통신비·전기요금 채무 등 일부 비금융채무가 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개정안에 따른 렌탈 채권의 경우 상기의 채권들과 달리 취약채무자의 생활 및 경제적 재기에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상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동산의 임대차 영업에 대한 상거래채권에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가전기기뿐만 아니라 렌트카, 드론, 명품가방 및 주얼리, 산업장비 등에 대한 임대차채권 역시 포함됨.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관 간 사적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합의를 바탕으로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는 기관으로, 원칙적으로 상거래채권인 렌탈 채권은 금융채무가 아닌 만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제도¹⁴⁾를 통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렌탈상품은 일상생활용품뿐 아니라 고급가전, 명품대여까지 매우 다양하며 이를 생활 필수 서비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통신비, 전기요금 등과 동일하게 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모든채무(금융채무, 상거래채무, 조세, 사채 등 사적채무)를 조정

참고

국내 렌탈산업 현황

□ **[개요]** 렌탈(Rental) 산업은 「상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동산의 임대차를 영업으로 하며 운영되는 상행위 시장

- 최근 소비 패턴 및 세대 변화, 경제적 부담 완화, 렌탈 품목의 확대 및 다양화, 구독경제 확산 등으로 성장 중

□ **[종류]** 이용 대상별로 개인 및 가정용 제품 중심의 **B2C**와 기업 대상 산업용 장비와 서비스 제공 중심의 **B2B**로 구분

구 분	B2C (개인·가정용 소비자 대상)	B2B (기업·기관 대상)
시장 특성	생활가전·주거, 개인건강용품, IT기기, 모빌리티, 레저·취미, 정기구독 등 생활 필수재 → 웰빙, 디지털 → 레저·사치품 등으로 확장추세	IT기기·산업장비·차량·창업설비 등
주요 품목	정수기, 공기청정기, 냉장고, 세탁기, TV, 매트리스, 소파, 캠핑카, 드론, 명품가방 및 주얼리, 펫 급식기 등	노트북, 서버, 프린터, 계측기, 고소장비, 매장 집기, 차량 등

□ **[규모]** 통계청 기준 '23년 렌탈 시장 매출액은 22.8조원으로, '16년 13.5조원 대비 69% 증가(연평균 약 8% 증가),

- 이 중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매출액은 5조원으로, '16년 3.1조원 대비 61% 증가

<국내 임대업(부동산 제외) 매출액 추이*>

(단위 : 조원, 개)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총 매출액	13.5	15.9	18.6	18.6	20	21.1	21.4	22.8
운송장비 임대업	5.7	7.6	9.4	8.7	9.9	10.2	9.5	10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3.1	3.2	3.8	4.5	3.9	4.1	4.5	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4.5	4.8	5.2	5.2	6.1	6.7	7.2	7.6
무형 재산권 임대업	0.1	0.2	0.1	0.1	0.1	0.1	0.2	0.2
사업체 수	1.6만	1.6만	1.7만	1.8만	2.4만	2.4만	2.4만	2.5만

*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산업별 총괄 자료(2020~2023년),

문 의 처
02)6788-5108